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1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가.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사항중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한 규정을 삭제함. (안제20조)
- 다. 신고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직원 직권으로 급수중단을 할 수 있도록한 처분규정을 일부 완화함. (안제20조)
- 나.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사항을 승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. (안제24조)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0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2항중 “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”를 “신고의무를 촉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 제목 “권리의무의 승계”를 “권리의무”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상하수도과 ☎ 940-4801
입안자	상하수도과장	강경배
	수도행정담당	박찬규
	담당자	윤태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신고) ① 수도사용자들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~6. (생략) 7. <u>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</u>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	제20조(신고) ①----- ----- ----- -- . 1~6. (현행과 같음) 7. (삭 제) ②----- ----- -----신고 의무를 촉구하는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
제24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.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권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</u>	제24조 (권리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삭 제)